

민간재개발사업(2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및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적(m ²)	비고
1	가리봉 87-177번지 일원	40,552	가칭)가리봉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가리봉 115번지 일원	83,949.57	가칭)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제한사유

- 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 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공공·민간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3.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 제외 대상 행위

가. 제한대상

- 1. 건축물의 건축
 -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 토지분할
-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나. 제한제외 대상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 「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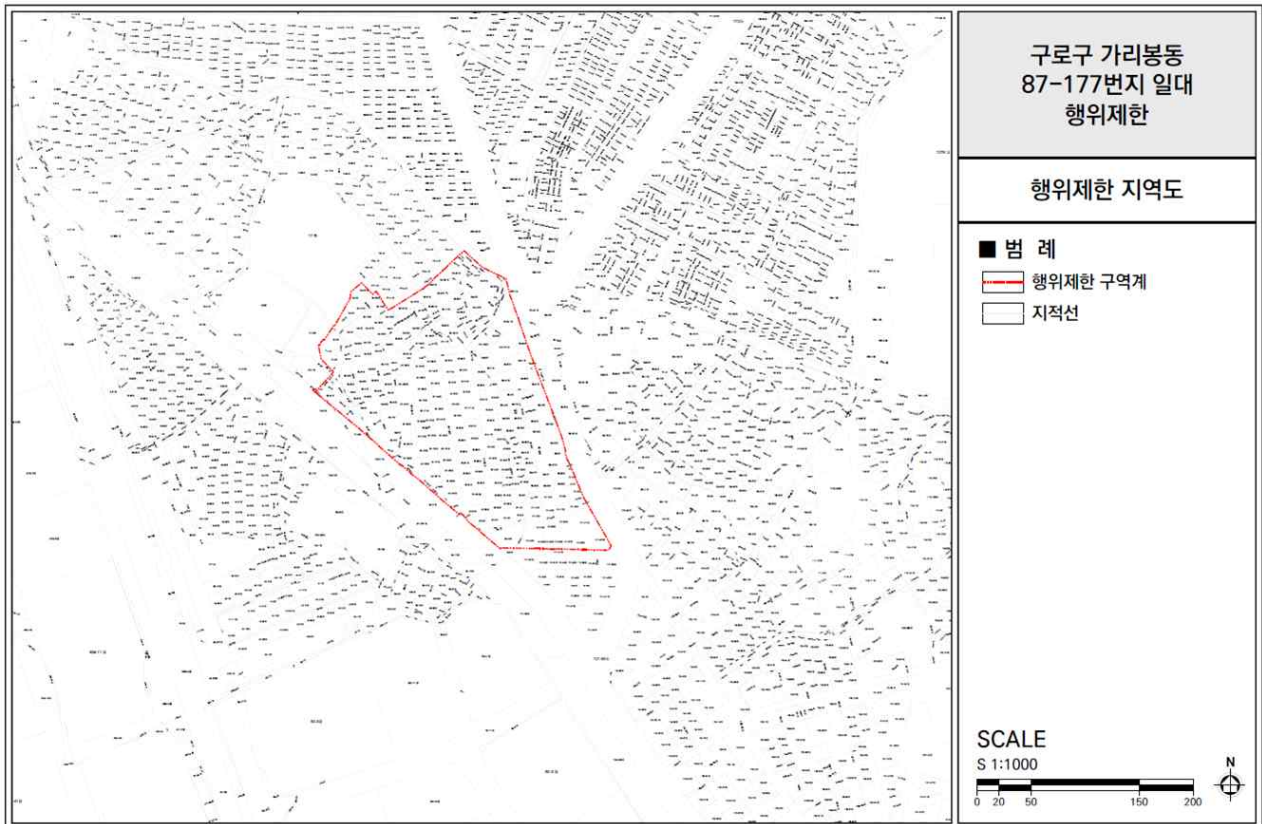
5. 지형도면 : 붙임 참고

6.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도시개발과(☎860-2962,2534)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지형도면]

○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